

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(제68조의4제1항 관련)

대행기관 교육	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,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.
------------	---



대행기관 등록	<p>가.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나.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고, 발급받은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.</p> <p>다.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사무실 안에 비치해야 하고,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의뢰하는 자(이하 "대행 의뢰인"이라 한다)가 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.</p>
------------	--



대행업무 수입	<p>가. 대행기관은 「변호사법」 제35조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유상으로 유치(誘致)할 목적으로 청·사무소·출장소에 출입하거나, 「행정사법」 제22조제6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나.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에게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만을 요구해야 하고, 대행 의뢰인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</p> <p>다. 대행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.</p>
------------	---



행정관서	가. 대행업무 수행 시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청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방문	<p>· 사무소·출장소에 출입하거나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</p> <p>나.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·사무소·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영 제34조의2 본문에 따라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거나, 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.</p>
----	---



대행 서류 제출	<p>가.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의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임을 알리고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</p> <p>나. 대행기관은 위조, 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함에 따라 대행 의뢰인이 체류 관련 신청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</p>
-------------	---